

#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15
----------	-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이유

○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기존의 농작물에 산림작물을 추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,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함(안 제2조)

○ 농작물 ⇒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확대함

나. 산림작물 피해액 산정기준 신설함(안 제4조)

○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출다. 피해예방시설 지원 근거 마련함(안 제10조)

라.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근거 마련함(안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
「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」  
(환경부고시, 위임행정규칙) 제18조

나. 예산조치: '16년도 예산 217백만원 확보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완화함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6. 2. 12. ~ 3. 03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붙임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명 “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”를 “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앞의 “제1장 총칙”을 삭제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농작물 등”이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4호·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·산림작물을 말한다.

제2조3호 중 ““농작물피해”란 농업인”을 ““농작물 등 피해”란 농업인·임업인 (이하 “농업인 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“농작물”을 “농작물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농업인”을 “농업인 등”으로 “농작물”을 “농작물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“피해농업인””을 ““피해농업인 등””으로 “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가목”을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와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”로 “농작물”을 “농작물 등”으로 “농작물 밭”을 “농작물 등과” “농업인”을 “농업인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목 “(적용범위)”를 “(피해보상 요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이 조례는”을 “군수는”으로 “농작물·”을 “농작물 등 피해 및”으로 “피해농업인에 한하여”를 “피해농업인 등에 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3조 다음의 “제2장 농작물피해 보상”을 삭제한다.

제4조 제목 “(피해액 산정기준)”을 “(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산정은”을 “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”으로 “산출한다.”는 “산출하고,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”로 한다.

제5조 제목 “(피해보상액 산정)”을 “(농작물 등 피해 보상액 산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·제7조제3항·제8조제2항·제9조제2항 중 “피해농업인”을 “피해농업인 등”으로 하고, 제6조제2항 중 “농작물피해”를 “농작물 등 피해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“(피해신고 및 조사)”를 “(농작물 등 피해 신고 및 조사)”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“피해농업인”을 “피해농업인 등”으로 “농작물피해 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”를 “농작물 등 피해 발생사실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피해농업인”을 “피해농업인 등”으로 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피해”를 “농작물 등 피해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(피해보상 절차)”를 “(농작물 등 피해 보상절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피해농업인”을 “그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을 피해농업인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피해농업인”을 “피해농업인 등”으로 “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”를 “군수에게 그 피해보상금을”로 한다.

제7조 다음의 “제3장 인명피해 보상”을 삭제한다.

제8조 제목 “(피해신고 및 조사)”를 “(인명피해 신고 및 조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피해농업인”을 “피해농업인 등”으로 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”를 “인명피해”로 “14일”을 “5일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“(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)”을 “(인명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)”
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피해농업인”을 “피해농업인 등”으로 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명피해 지원금청구서를”을 “피해지원금을”로 한다.

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0조(피해예방시설의 지원)**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세부기준 및 방법·절차 등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1조(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)**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,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</u></p> <p><u>제1장 총칙</u></p> 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유지를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“야생동물”이란 야생포유류, 야생조수, 독사류 등을 말한다.</p> <p>2. “농작물”이란 「<u>농어업재해대책법</u>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.</p> <p>3. “<u>농작물피해</u>”란 농업인이 직접 재배·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.</p> <p>4. “<u>인명피해</u>”란 농업인이 군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·재배하는 중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.</p> <p>5. “<u>피해농업인</u>”이란 「<u>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/u>」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일 기준 군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·재배하는 중에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말한다.</p> <p><u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·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를 한 피해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2장 농작물피해 보상</u></p>	<p><u>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정의) -----</u></p> <p>1. -----</p> <p>2. “<u>농작물 등</u>”이란 「<u>농어업재해대책법</u>」 제2조제4호·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·산림작물을 말한다.</p> <p>3. “<u>농작물 등 피해</u>”란 농업인·임업인(이하 “<u>농업인 등</u>”이라 한다)---<u>농작물 등</u>-----</p> <p>4.-----<u>농업인 등</u>-----<u>농작물 등</u>-----</p> <p>5. “<u>피해농업인 등</u>”--「<u>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/u>」 제3조제2호와 「<u>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-----<u>농작물 등</u>-----<u>농작물 등과</u>-----<u>농업인 등</u>-----</p> <p><u>제3조(피해보상 요건) 군수는-----</u>  <u>---농작물 등 피해 및-----</u>  <u>-----피해농업인 등에</u>  <u>한정하여-----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피해액 산정기준) ① 피해액 산정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100분의70을 곱하여 산출한다.</p>	<p>제4조(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기준) ① --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----- ----- -----산출하고,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피해보상액 산정)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업인에게 최대 500만원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, 동일 경작지에 대한 지급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5조(농작물 등 피해 보상액 산정) ① ----피해농업인 등----- ----- -----</p>
<p>② ~ ③ (생략)</p>	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피해신고 및 조사) ① 피해농업인은 농작물피해 현장을 보존하고, 농작물피해 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·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농작물 등 피해 신고 및 조사) ① 피해농업인 등-----농작물 등 피해 발생사실을----- ----- -----</p>
<p>② 읍·면장은 신고접수 후 농작물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농작물 등 피해----- -----</p>
<p>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피해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③ -----피해농업인 등-----농작물 등 피해----- -----</p>
<p>제7조(피해보상 절차)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피해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농작물 등 피해 보상절차) ① -----그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을 피해농업인 등----- -----</p>
<p>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피해농업인 등----- -----군수에게 그 피해보상금을----- -----</p>
<p>③ 군수는 피해농업인에게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③ -----피해농업인 등----- -----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장 인명피해 보상</u></p> <p><u>제8조(피해신고 및 조사) ① 피해농업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·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  <u>② 읍·면장은 신고접수 후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농업인이나 그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다. 이하 같다) 입회하에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9조(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) ① (생략)</u>  <u>② 피해지원금은 직접 피해농업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피해농업인이 사망하였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.</u>  <u>③ 피해농업인이나 그 가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명피해 지원금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</u>  <u>④ (생략)</u></p> <p><u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제8조(인명피해 신고 및 조사) ① 피해농업인 등-----인명피해-----5일-----</u>  <u>② -----</u>  <u>피해농업인 등-----</u>  <u>-----</u></p> <p><u>제9조(인명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) ①(현행과 같음)</u>  <u>② -----피해농업인 등-----</u>  <u>-----피해농업인 등-----</u>  <u>③ 피해농업인 등-----피해지원금을-----</u>  <u>-----</u>  <u>④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제12조(시행규칙) -----</u>  <u>-----</u></p> <p><u>제10조(피해예방시설의 지원)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 <u>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세부기준 및 방법·절차 등은 「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<u>제11조(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)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,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</u></p>

#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#### 가. 비용발생 요인

-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, 산림작물, 인명피해 재정지원

#### 나. 관련 조문

- 제3조(피해보상 요건)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, 산림작물,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를 한 피해 농업인 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피해예방시설의 지원)

### 2. 비용추계의 결과

#### 가. 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	합계
총 비용(a - b)	217	228	239	251	264	1,199
세출	군 비	217	228	239	251	1,199
	소계(a)	217	228	239	251	1,199
세입						
	소계(b)					

### 3. 관련 의견

- 물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지원예산이 증가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-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, 산림작물, 인명피해 재정지원  
(농작물 등 피해, 인명피해,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등)  
- 2016년도 예산확보액 : 217백만원 (국비 20, 도비 17, 군비 180)

작성자 : 녹색환경과장 김 삼 수